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427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2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 국장 곽석철(6573) **의무팀장** 김철욱(6542) 팀원 김경덕(6582) E-mail : kam008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08375호

시행일자 2026. 10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위반 현장 지도·점검 강화 계획 안내(보건복지부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-5555(2026.10.22.)

3. 최근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내 주사행위 없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직접 조제·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 위반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4. 비만치료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「약사법」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"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"에 한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 및 의료기관에서의 판매(수여)가 허용됩니다.

5. 따라서,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음에도 원외 처방전 발급 없이 해당 의약품을 조제·판매하는 행위는 「약사법」 제23조제4항 및 「의료법」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, 관계 법령*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「약사법」 제23조제4항 :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*「의료법」 제18조제1항 :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1차 자격정지 15일,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

6. 이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·도에 관할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관련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·점검 강화를 요청하였으며, 특히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우리 협회에 알려온 바 있습니다.

7. 이에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,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